

시 설 관 리 규 정

제정 1986.12. 3 개정 1994. 6.18
 개정 1989. 5.29 개정 1997. 4. 1
 개정 1992. 3. 1 개정 1998.12.24
 개정 1993.10. 9 개정 2001. 6. 1
 개정 1994. 3.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시설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라 함은 대학 전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가. 건 물

| 대 분 류 | 소 분 류 |
|---------|-------------|
| 대학 전건축물 |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

나. 기계장치

(1) 발전기,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

(2) 전기, 통신, 자동제어, 배관시설, 소화시설, 취사설비, 운반장치 등

(3) 전산기, 공작기계, 실험기기

2.“정비”라 함은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 기능자가 열화복구나 설비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점검, 검사, 조정수리를 말한다.

3. “시설관리”라 함은 설비가 최적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운전 및 사용, 정비, 청소 등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시설관리부서”라 함은 시설운용과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일상점검”이라 함은 운전이나 사용중 또는 그 전후에 시행하는 외관검사와 일상 급유, 청소 및 간단한 조정작업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설비의 열화정도를 외관점검, 개방점검을 통하여 수리 또는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정밀검사”이라 함은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설비를 분해 또는 비분해하여 필요시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소수리”라 함은 일상 점검하는 작은 수리부위에 대하여 간단한 복구가 가능한 개소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정기수리”라 함은 일정한 주기를 두어 설비단위로 계획적인 휴지하에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10. “대수리”라 함은 가동계획에 의거 시설의 열화 복구 및 성능보전을 위하여 시설별로 년 1~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11. “돌발수리”라 함은 가동중 또는 사용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고장 또는 사고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제 2 장 업 무 구 분

제 4 조(업무의 구분) 시설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전 및 사용부서(이하“운용부서”라 한다)
 - 가. 일상점검, 급유, 청소 및 운용에 필요한 간단한 조정
 - 나. 정기수리 및 돌발수리 추진
 - 다. 시설관리부서의 설비수리에 대한 시운전 및 인수
2. 시설운영 및 정비업무부서(이하“시설관리부서”라 한다)
 - 가. 대수리, 정기수리, 돌발수리에 수반되는 수리업무
 - 나. 소수리 업무
 - 토건정비업무 : 토목, 건축, 조정시설의 점검 보수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 기전설비업무 : 위생, 난방, 냉방, 소방, 조명, 전력설비의 보수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

제 5 조(운용부서의 임무) 운용부서는 시설물의 운전 및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시설물의 안전운용
2. 시설관리부서에 대한 정비상의 신고
3. 시설물의 운용자 일상점검, 예방점검

4. 시설물의 청결유지
5. 설비에 대한 적절한 급유
6. 소관 설비의 소수리
7. 운용 통계 기록유지
8. 고장의 발생 또는 고장징후 발견시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9.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시설관리부서의 임무) 시설관리부서는 설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설비 대장(기기이력 카드) 작성
2. 시설운영 및 점검, 검사 계획수립 시행
3. 정기점검 및 대수리의 실시
4. 수리공사 계획수립 시행
5. 정비용 부품확보
6. 정비예산 자료 및 정비실적 작성
7. 시운전 입회 및 운용상의 기술 지원

제 3 장 설비관리절차

제 7 조(시설물관리 선행사항) 시설관리부서는 설비계획서 및 공사계획서에 의거 당해 정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설비 준공후의 설비운용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운용부서장에게 송부한다.

제 8 조(시설관리 요청) ① 운용 부서는 사용상 정비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보수 신고서를 기록,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관리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가. 설비사양서
- 나. 설비도면
- 다. 취급설명서
- 라. 순환적유표
- 마. 예비품 목록
- 바. 시운전 기록
- 사. 기타 정비자료

③ 설비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운용부서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정비작업의 실시) ① 발생한 정비작업의 검토 결과 기술적, 시기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력작업 및 외주작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용부서는 점검기준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해당설비에 대하여 정밀검사가 요청될 시는 정비부서에 의뢰한다.

③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시 발견한 소수리의 시행은 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시행한다.

제10조(시운전) ① 수리작업이 완료되면 시운전을 행한다. 다만, 시운전이 불가하거나 필요치 않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운전은 시설관리부서의 주관으로 운용부서와 시공업체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제11조(검사 대상기기) ① 정부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법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 대상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일러(압력용기) 계속 사용 안전검사 : 1회/년(1회/년)
2. 보일러 성능검사(5ton이상) : 1회/년
3. L.P.G Tank 개방검사 : 1회/5년
4. L.P.G Tank 정기검사 : 1회/년
5. 전력수용설비 정기점검 : 1회/3년
6. 승강기설비 정기점검 : 1회/년
7. 크레인설비 정기점검 : 1회/년
8. 발전설비 정기검사 : 1회/3년

제12조(위험물 관리) 위험물 관리기준 주요점검 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의 2(방사성동위원소 시설물 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의 3(액화석유가스 시설물 관리) 액화석유가스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의 4(소방시설물 관리) 소방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방화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설 비 사 고

제13조(설비사고의 정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불량개소가 발견되지 않아 돌발적으로 설비가 휴지(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10분이상 휴지한 상태는 예비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로 취급한다. 다만 계획에 의한 휴지 또는 정기수리의 연장은 설비 사고로 하지 않는다.

제14조(사고구분) 설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A, B, C등급으로 구분한다.

1. A급 : 유틸리티 공급중단 3일 이상 또는 직접손실액 3,000만원 이상
2. B급 : 유틸리티 공급중단 1일 이상 또는 직접손실액 1,000만원 이상
3. C급 : 유틸리티 공급중단 1일 미만 또는 직접손실액 1,000만원 미만

제1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설비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대학서비스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구매관재팀장 및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단, 교수APT에 관한 각종 안전사고시 주거운영팀장 및 아파트 자치회장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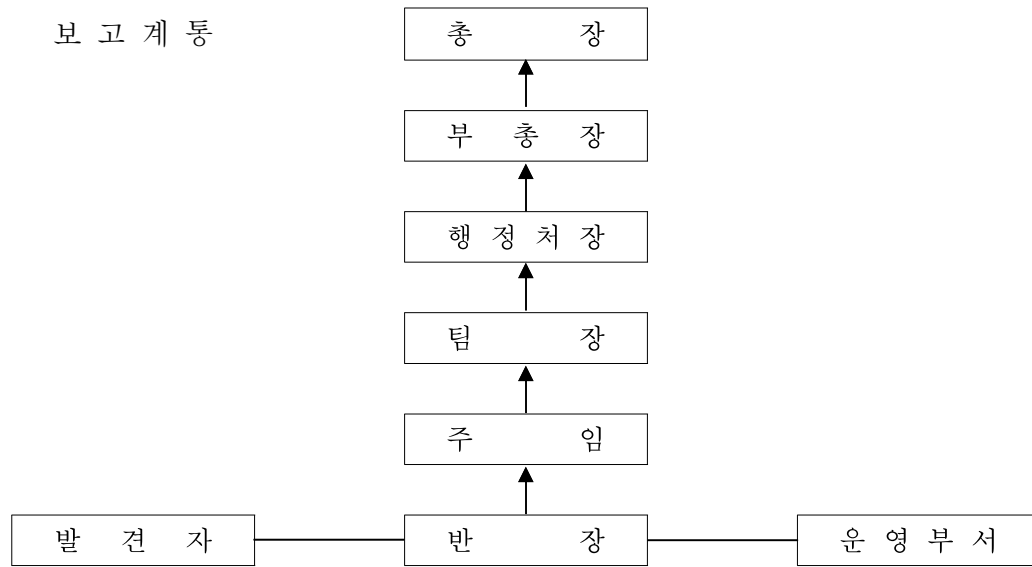
③ 간사는 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제1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설물/물질(전기, 소방,기계, 설비, GAS, 폐기물, 오염물질, 방사성물질 등)의 안전운용 및 환경보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고 원인 및 손실액 추산에 관한 사항
2. 사고복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사고책임 규명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대책 협의 및 조정 사항
5. 환경공해 관련 주요사항
6. 관련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사고보고절차) ① 설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설비운전자 또는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후 지체없이 사고보고계통에 의하여 유선으로 보고하며 운전책임자는 사고내용 및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 고장 또는 사고내용을 접수한 근무자는 통고받은 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 보고계통에 즉시 보고하고 고장 및 사고속보를(별지 제1호서식)발행 익일 09:00까지 보고한다.



제19조(사고처리) ① 시설관리부서는 설비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는 설비고장 또는 사고 즉시 시설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타업무에 우선하여 복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는 부보자산중 설비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청구를 위하여 24 시간 이내에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범위) 설비사고에 대한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고원인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분 | 직 접 책 임 | 감 독 책 임 | | 관 리 책 임 | |
|-----|---------|---------|-----|---------|-------|
| | 담 당 자 | 반 장 | 주 입 | 팀 장 | 센 터 장 |
| A 급 | ○ | ○ | ○ | ○ | ○ |
| B 급 | ○ | ○ | ○ | ○ | — |
| C 급 | ○ | ○ | ○ | — | — |

제21조(사고기록) 설비사고기록은 운용부서에서 사고처리대장, 사고보고서를 관리하여 통계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 5 장 환 경 관 리

제22조(임명) ① 환경관리인은 관련법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학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용량 이상 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한다.

제23조(임무) ① 환경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배출시설 운영일지의 기록유지
- 2.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술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 2.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유지
- 3.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의무) ①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는 오염물질의 방치, 임의처분, 방류 등으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② 폐기물 운반시 비산, 낙하, 누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환경관리 규정은 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별표1)

위험물 관리 주요 점검 항목

| 점 검 구 분 | 착 안 점 |
|----------------|---|
| 1. 화기의 사용 제한 | 가. 작업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화기를 위험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 저장소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가? |
| 2. 정리 정돈 | 가. 불필요한 가열물을 방치해 두지는 않는가? 나. 폐기할 위험물(폐유등)은 소각, 매몰등 각각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
| 3. 저장소내의 출입 제한 | 가. 종사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종사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기구, 기기등에 접촉하는 일은 없는가? |
| 4. 전기 설비 | 가. 전선, 기기의 손상된 곳은 없는가? 나. 시설의 수리, 개조시 불완전한 임시배선, 임시등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 5. 소방용 설비 | 가. 자동방재 기능은 정상인가? 나. 종사원 취급요령 숙지 여부 |
| 6. 탱크 및 부속설비 | 가. 탱크 본체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가? 나. 자동감지장치, 안전밸브 통기관의 기능은 어떠한가? 다. 압력 및 온도 각종상태는 정상인가 라. 배관상의 LEAK되는 곳은 없는가 마. 철구조물의 산화된 곳은 없는가 |
| 7. 기존 건물시설 | 가. 소방법상에 규정된 기존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별지 제1호서식)

| 이상발생 및 고장 사고 보고서 | | | | 결 | 반 장 | 주 임 | 팀 장 | 처 장 |
|------------------|--|------|--|---------|-----|-----|-----|-----|
| | | | | 재 | | | | |
| 사 고 명 | | | | 발생일시 | | | | |
| 설비휴지시간 | | 발생설비 | | 참 고 도 면 | | | | |
| 피 해 구 분 | | 소 속 | | | | | | |
| 발 생 상 황 | | | | | | | | |
| 조 치 내 용 | | | | 예 방 대 책 | | | | |
| 원 인 | | | | 의 견 | | | | |